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교육과정부

1 목적

- 가.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나.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 다.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극대화한다.
- 라. 방과후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한다.
- 마. 교육 격차 완화를 통한 실질적 교육복지를 구현한다.
- 바.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에 기여한다.

2 방침

- 가. 학생·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나.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편성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희망할 경우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한다.
- 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선정, 수강료 책정, 강사 선정 등의 주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 및 운영한다.
- 라. 학교의 시설 및 인적 자원 활용 극대화, 교육청의 인력풀제 의거 강사 선정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 마. 학부모에게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 비용을 최소화한다.
- 바. 소요경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한다.
- 사. 국고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되,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 아. 지도 강사로 임용된 강사에게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 받아, 사전에 교육 내용을 점검·지도한다.
- 자.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3 세부 추진 계획

가. 연간 세부 실천 내용

사업 내용	세부 실천 내용	목표량	시기	대상	비고
기초조사 및 분석	프로그램 수요조사,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2회	3월, 8월	전교생	
운영 계획 수립	기초조사 내용 반영	1회	3월	교육과정부	
프로그램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2회	3월, 8월	학운위	
강사 선정, 임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2회	3월, 8월	학운위	

지도 계획 수립	지도계획서 작성	2회	3월, 8월	지도강사	
수강 안내 및 수강생 모집	활동 희망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2회	3월, 8월	전교생	
수강료 징수	수익자 부담	2회	4월, 9월	참가학생	
프로그램별 반편성	출석부 작성	2회	3월, 8월	교육과정부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 의한 수업 실시			참가 학생	
운영평가 및 만족도 조사	학기별 활동 후 설문조사	2회	7월, 12월	참가 학생, 학부모	
교육활동 홍보	학교홈페이지 등		수시	학생, 학부모	

나. 개설 프로그램 운영 방법

1) 인원수 및 강사비

- 1팀(분기별) 20시간, 1강좌당 인원수 15명 기준(변동 가능), 강사비는 시간당 40,000원

2) 운영 시간

- 운영 기간 : 2023년 3월~2024년 2월 (학기별 운영)
- 운영 시간 : 월, 금 (15:40~16:25) 화, 목(16:30~15:15)

3) 개설 프로그램 결정

- 기초조사 결과 수요자의 요구 및 학교 실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 프로그램 결정한다.
- 수강 희망 학생이 10명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 개설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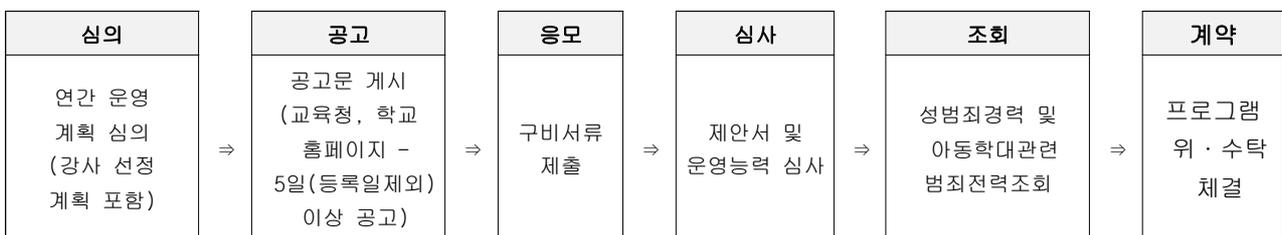
4 강사 모집 및 계약

가. 강사 모집

- 1)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심의할 때 강사 선정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 하며, 강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한다.
- 2)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3) 외부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고, 취업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한다.

나. 계약 절차

- 1) 제안서와 운영능력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계약한다.
- 2) 강사 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 계약 해지

- 자동 해지 :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
- 학교장에 의한 해지
 - 〈즉시 해지〉 :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절차 해지〉 :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강사 수령 확인) 후 효력 발생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 강사 해지 :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 ※ 계약 해지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5 강사 선정 및 심사

가. 심사위원 구성

- 1) 심사위원은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방과후학교 부장, 교감(제안서평가위원회)으로 구성한다.
 - * 개인위탁 강사 선정을 위한 면접에는 외부위원(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 2) 심사위원은 제출받은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와 면접 등을 통하여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청렴 및 보안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약서를 제출한다.

나. 세부 계획

순	절차	비 고
1	공고 및 응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곧해솔중학교 홈페이지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 접수방법 : 1층 교무실
2	제안서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 1차 제안서 평가 결과 개별통보
3	운영능력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1층 교무실
4	심사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 발표 ■ 배곧해솔중학교 홈페이지에 발표 ■ 개별 통지

※ 최종 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를 강사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 차점자 순으로 계약 운영

6 교재 및 재료 선정 계획

가. 교재(교구) 및 재료에 관한 내용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나. 프로그램별로 제출한 교재(교구) 및 재료 선정계획은 교재교구선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7 회계 관리

가. 회계 관리 및 운영

- 1)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교재와 재료 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된다.
- 2)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징수한다.
- 3) 수강료 산출 시 수용비는 강사료의 7% 이내로 한다.

나. 강사료

- 1)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 시수, 수강 학생 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한다.
- 2) 소속 교원이 강사로 활동할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로 합산하여 정산한다.
- 3) 외부 강사는 사업 소득세를 적용하여 원천 징수한다.
- 4) 담임교사가 방과후학교에서 본연의 업무(입학 상담이나 진로 지도 등)와 관련된 내요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받을 수 없다.
- 5) 강사료는 분기별로 교육활동이 종료 후에 행정실에서 지급한다.

다. 정산 및 환불

- 1) 수익자부담 경비의 집행 잔액은 수강생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 잔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생복지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기본안을 참조하여 학교 회계 처리 방침에 따라 환불 처리한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기본안(경기도교육청)

구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월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않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 3항 [별표4]를 준용하여 작성함.

라. 자유수강권 지원

- 1)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에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 2) 지원 방법
 -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 3) 지원 대상 및 순위
 - 1순위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충족한 자 및 난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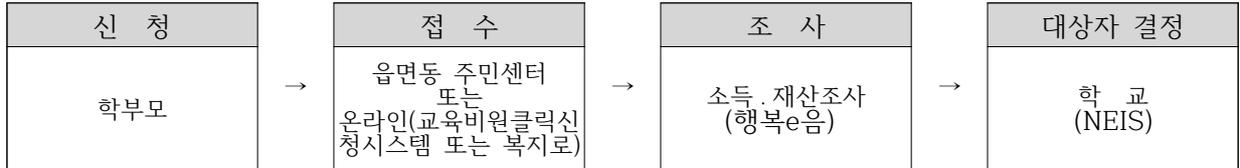
(기초수급자, 법정 한부모, 차상위 대사장사, 법무장관 추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세월호 침몰관련 피해자, 탈북가정학생)

- 2순위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3순위 : 학교장 추천(1,2순위 10% 이내, 교육비 지원 신청 필수→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
- 기타 :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교육비 지원 신청이 불가능한 학생, 학교장 추천 비율에 미포함)

4) 학교장 추천 시 공정성 강화

5)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 학부모가 읍면동(또는 온라인)에 신청→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6) 사용 범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지원대상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에 지원할 수 있다.

7)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의 이용 제한 및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8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가.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나. 프로그램 참여 시 교사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한다.

- 1)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 2) 학생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입장 지도한다.

다.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1)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 2) 방과후학교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한다.
- 3) 직사광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 호우, 흑한, 폭설 등 기타 교육감(학교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 4)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 시,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학부모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5) 학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 관련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6) 감염병에 대응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한다.

라.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한다.

※ 외부위탁업체와 계약 시에는 교내.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상청구 가능하도록 민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계약

마.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학교외부에서 교사 등의 입장 없이 외부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9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운영

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방과후학교를 중지, 연기하거나,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 라인 연계 등)으로 운영한다.

나. 원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운영한다.

※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는 영상 등 콘텐츠(자체 제작 또는 공개된 학습 영상 등)는 당일 운영 시간의 20% 이내로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전에 운영계획서 제출

※ 공표된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 관련 법적 권한 확인 후 활용

10 평가 및 환류

가. 평가 방법

- 1) 강사는 학기별 1회 학생의 개인별 활동상황을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 2) 강사는 학생의 활동상황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 3)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및 의견수렴을 연 2회 실시한다.
- 4) 방과후학교 활동을 위한 계획, 편성, 운영 내용 등을 자체 평가하여 환류한다.

나. 평가 결과의 활용

- 1) 방과후학교 활동을 위한 운영 계획, 부서 조직, 강사 임용, 학생들의 준비성, 참여자세, 기능 향상 정도, 흥미.특기의 적합성 등을 질문지, 관찰, 누가 기록의 방법 등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부서의 반성자료, 학생지도의 참고자료, 학부모와의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 2) 학생, 학부모 설문지 만족도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프로그램의 폐강 또는 유지한다.

11 홍보

가.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코너를 개설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나. 방과후학교 코너에 학습 계획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안내한다.

12 기대 효과

가. 공교육 시설 활용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 계발하고 및 특기 신장에 기여한다.

나.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구현 및 학생의 소질, 적성 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다양한 경험 제공을 통한 학교 교육의 기능 강화에 기여한다.